#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911

발의연월일: 2021. 2. 3.

발 의 자 : 추경호 · 김정재 · 윤창현

정희용 • 이양수 • 김용판

이종성 · 이종배 · 박완수

구자근 · 김승수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중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월세액의 100분의 10,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근로자의 경우에는 월세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세액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하여주고 있음.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계속된 부동산정책 실패로 전·월세 부담이 급증하였음.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에 따르면 현행 월세 세액공제 제도가 시행된 2015년 대비 2020년 전국기준 평균 월세액이 연간 672만원에서 782만원으로 약 100만원 증가하였으며 서울 기준 평균 월세액은 연간 974만원에서 1,164만원으로 약 200만원 증가하였음.

이에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비율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24로 각각 2배 상향하고,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월세액의 한도도 75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100만원인상하여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95조의2제1항).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의2제1항 본문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100분의 12"를 "100분의 24"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750만원"을 "850만원"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
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제) 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	
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	
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	
항·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	
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	
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	
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	
액의 <u>100분의 10</u> [해당 과세기	<u>100</u> 분의 <u>20</u>
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	
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	

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조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③(생략)

<u>100분의 24</u>
<u>850</u>
<u>만원</u>
②·③ (현행과 같음)